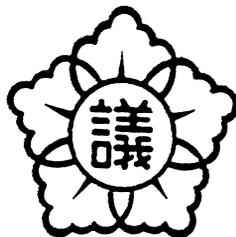


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 ·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 의 회

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 ·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8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4. 11. .

발 의 자 : 김 종 복 의원(인)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, 여비의 금액을 결정한 후 2015년도 하남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15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함.
(안 별표 1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

6. 예산 수반사항 : 월정수당 인상분 2,940천원 증액

- 2014년도 : 2,070,000원 × 12개월 × 7명 = 173,880,000원
- 2015년도 : 2,105,000원 × 12개월 × 7명 = 176,820,000원

7. 입법예고 결과 : 2014. 11.13~11.24 ‘의견없음’

8. 부서협의 결과 : 2014. 11.13~11.19 ‘적정’

9. 기타 참고사항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
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2조제3항 관련)

구 분	지 급 금 액	비 고
의회의원	월 2,105천원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2조제3항 관련)			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2조제3항 관련)		
구 분	지 급 금 액	비 고	구 분	지 급 금 액	비 고
의회의원	월 207만원		의회의원	월 2,105천원	

※ 관련법령 참고사항

지방자치법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3. 월정수당: 별표 7에 따른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하남시의회의원 2015년도 ~ 201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통보

수 신 : 하남시장, 하남시의회의장

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, 여비의 결정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통보합니다.

2015~201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

2014. 의정비지급액	2015. 의정비 지급기준액	비 고
연38,040,000원	연38,460,000원	

※ 의정활동비 : 연1,320만원 / 월정수당 : 연2,526만원

구 분	의결사항	비 고
2016년도	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	월정수당(반영금액) + 의정활동비(1,320만원)
2017년도	2016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	월정수당(반영금액) + 의정활동비(1,320만원)
2018년도	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	월정수당(반영금액) + 의정활동비(1,320만원)

단 2016년~18년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7의 지급기준액을 재산정하여 한도(20%) 초과시 해당년도 조례개정 불가

■ 여 비 :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 5, 6에 의한 금액

2014. 10. 30.

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